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및 의료 해외진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일부 정원의 직렬에 연구직렬을 추가하며,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제6조의2제3항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자·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을 두되”를 “통상개발담당관 및 해외의료담당관을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3. 보건복지 분야의 외국 정부와의 협력
4. 보건복지 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
5.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사, 이사회 운영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분야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⑰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대외통상업무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건의료산업 분야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분야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 분야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8. 보건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관리(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등)
 10. 보건복지 분야 관련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보건의료 시스템, 제도, 인력교육 등)
- ⑱ 해외의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 제3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8 다음에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78 다음에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의 총계 및 일반직 계 “332”를 각각 “333”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19”를 “320”으로 한다.

별표 4 중 공업서기 “1”을 “2”로 하고, “기계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보건서기보 4 다음에 “의료기술서기보 1”을 신설하며, 간호조무서기보 56 다음에 “전산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2”를 각각 “34”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0”을 “12”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57”을 각각 “35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21”을 “32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③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6조의2제3항제20호, 제21호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호까지-----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다자·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통상개발담당관 및 해외의료담당관을 두며-----
⑦ ~ ⑮ (생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⑯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	⑯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2.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라. 전문인력 양성 마. 국내외 홍보 바. 사업(의료 해외진출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육성 및 지원	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3. 보건복지 분야의 외국 정부와의 협력 4. 보건복지 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 5.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사, 이사회 운영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분야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사. 조사 및 연구(의료 해외진출 관련 조사 및 연구는 제외한다) ⑰ 다자·통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 2.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4.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 총괄 5.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6.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7.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8. 보건복지분야의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 및 조정 9.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	⑰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분야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대외통상업무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건의료산업 분야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분야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립 및 조정 7. 보건복지 분야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8. 보건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
--	---	--	---

<u>보 및 자료의 수집</u>	<u>업관리(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등)</u>
<u>⑱ 양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u>10. 보건복지 분야 관련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보건의료 시스템, 제도, 인력교육 등)</u>
<u>1.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 기획 및 총괄·조정</u>	<u>⑱ 해외의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u>
<u>2. 보건복지분야 외국 정부와의 국제협력</u>	<u>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u>
<u>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u>	<u>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u>
<u>4. 유럽·아프리카·아시아·미주·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u>	<u>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u>
<u>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 및 지원</u>	<u>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u>
<u>나.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u>	<u>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u>
<u>다. 해외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u>	<u>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u>

<u>라.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u>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u>
<u>마.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u>	<u>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u>
<u>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⑩ (생략)</u>	<u>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⑩ (현행과 같음)</u>
	<u>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신·구정원대비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278	· ·	
<u>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3	+3
<u>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u>	<u>3</u>	<u><삭 제></u>	-3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278	· ·	
<u>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u><신 설></u>	<u>3</u>	+3
<u>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u>	<u>3</u>	<u><삭 제></u>	-3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립정신건강센터			
총계	<u>332</u>	<u>333</u>	+1
일반직 계	<u>332</u>	<u>333</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19</u>	<u>320</u>	+1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u>1</u>	<u>2</u>	+1
·	·	·	
·	·	·	
보건서기보	4		
의료기술서기보	<신 설>	<u>1</u>	+1
간호조무서기보	56		
전산서기보	<신 설>	<u>1</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1</u>	<삭 제>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1</u>	-2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2	34	+2
일반직 계	32	34	+2
·	·	·	
·	·	·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0	12	+2
·	·	·	
·	·	·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57	358	+1
일반직 계	357	358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321	322	+1
·	·	·	